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166

발의연월일: 2021. 2. 17.

발 의 자:이해식・한병도・송재호

이형석 · 오기형 · 민형배

이소영 • 김민철 • 임호선

김병주 · 양기대 · 고영인

오영환 · 김영배 · 서영교

김민석 • 서영석 • 허 영

우워식 • 이성만 • 강득구

조오섭 · 김경협 의원

(23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되, 특별한 용도로 시· 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조정교부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통해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 방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 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재정분권 방안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이 필요함.

이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 · 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

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15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3호), 「지방세기본법」(의안번호 제816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2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이의안번호 제8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을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	
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	
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	
여야 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	2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u>제71조제3항제3호가목</u>
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u>및 제4호가목</u>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	
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	
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